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2005.12.7 ~ 12.1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 사회복지과 소관 》

구 분	'05당초예산액	'06 요구액	증 감	증감률
세출(일반회계)	19,429,082	22,670,897	3,241,815	16.7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	304,000	309,500	5,500	1.8

◆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 기본조사 용역비 35,820천원(p245)

용역비에 대하여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거창군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사업 심의 규정」에 의거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령규정에 위반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동 사업은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고 후손들의 호국정신 고양을 위한 독립기념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로서 독립 기념관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건립 후에도 많은 관리비가 투입될 것이며, 우리 지역에는 가조.가북의 3.1독립운동을 제외한 뚜렷한 항일독립 운동의 유적지가 없는 상황에서 독립기념관의 건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함.

◆ 위천 마항경로당 신축사업 50,000천원(p253)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동일규모(66㎡)인 주상 내오2구, 고제 상수경로당의 경우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같은 도비보조사업인 위천 상천경로당 (99㎡)의 경우에는 군비가 2천만원 계상된 것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34,620천원(p264)

각종 행사참여에 따른 주민의 행사보상금을 계상하면서 3만원 또는 4만원으로 차등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원화 시켜 지급하여야 할 것임.

◆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보조금 2,503,218천원(p135)

저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인 보육시설에 대한 확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전년도에 26억 15백만원 보다 112백만원 감소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1,200,000천원(p271)

동 사업은 거창읍 송정리 일원에 부지 14,939m², 연건평 4,965m²로 건축하기 위하여 2003~200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임.

계속비사업 조서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1,809,000천원이 승인되어 이를 계상하여야 하나 609,000천원이 부족한 1,200,000천원만 계상된 것으로 미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시 별도 확보하여야 할 것임.

공사마무리를 위하여는 승인된 85억원 보다 15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최초 승인된 59억원보다 41억원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수정예산서의 계속비사업에 반영>

《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

구분	'05 당초예산액	'06 요구액	증 감	증감률
세출(일반회계)	609,324	3,405,636	2,796,312	358.9

◆ 군민의삶의질 지표측정 및 정책대안 개발용역 100,000천원 (p275)

거창군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것이나, 용역사업 내용이 정책개발 성격으로 종전에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분야별 용역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실제 정책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용역사업 시행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함.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25,000천원 (p280)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655백만원 증액된 것으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달될 경우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검토됨.

- 2006년도는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4,654백만원 미달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로는 초중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3억원과 학교밴드부 및 농악부 운영지원 1억원, 기타 초중고 학교시설비 지원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임.

금년도 군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된 「학교경비등에 관한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초중고의 개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신청을 받아 자체위원회의 적격 심의를 받은 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전 대상지를 확정 예산 계상한 것은 조례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검토됨.